

2014년도 「창업맞춤형사업 연구원 창업 프로그램」 예비창업자 및 주관기관 모집 공고

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연구인력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시행하는 『창업맞춤형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』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주관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4월 3일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연구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자금과 창업공간, 창업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 창업기업 육성

□ 지원규모 : 20억원, 20명 내외

□ 지원금액 및 사업비 구성

- 정부지원금 지원 : 최대 1억원(총 사업비의 70% 한도) 지원

구분	지원 금액	협약기간
1단계 지원금	최대 60백만원	12개월 이내
2단계 지원금*	최대 40백만원	

*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정

○ 총 사업비 구성

총 사업비	정부지원금	예비창업자 부담금	
		현금	현물*
100%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
* 현물은 인건비(신청자 본인 및 기존 임직원), 보유 기자재,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담

<예비창업자 사업비 구성 예시 >

구분	총 사업비 (A+B)	정부지원금 (A)	예비창업자 부담금(B)	
			현금	현물
1단계 지원금	8,000만원(100%)	5,600만원(70%)	800만원(10%)	1,600만원(20%)
2단계 지원금	5,000만원(100%)	3,500만원(70%)	500만원(10%)	1,000만원(20%)

* 상기 표는 **사업비 구성 예시**로 정부지원금은 **최대 지원 금액**(1단계 6천만원, 2단계 4천만원)까지 신청가능

○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지원 항목

창업자 지원금	시제품제작비	인건비, 외주물역비, 재료비, 기자재 구입비 등
	창업준비활동비	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, 여비, 사무실 임차비 등
	마케팅비	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홍보비, 홈페이지 제작비 등

* [참고 1] 2014년 연구원 특화 창업맞춤형사업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

□ 지원프로그램

○ 창업 프로그램 지원 : 시제품 개발 전·후로 구분,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품 개발에서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 제공

<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>

구분	1단계	2단계
	시제품 개발단계	창업 & 마케팅 단계
교육프로그램	1. CEO 역량강화교육(필수) 2. 투자유치 역량강화교육(필수) 3. 3D프린터 활용 교육	1. 조달교육 2. 수요자 중심 수시 특강
특화프로그램	1. 디자인 개선지원 2. 목업 및 금형제작 지원 3. 시장조사지원 4. 고객만족도 조사지원 5. 지재권 및 인증 지원 등	1. 법인설립 지원 2. 미니IR 참가 지원 3. 전시회 참가지원 4. 홍보물(동영상 포함) 제작지원 5.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등

* 필수 교육(40H)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

○ 입주공간 : 대전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에 위치한 '연구원특화 창업지원센터'에 1년간 무상입주 지원

* 예비창업자별 약 16.5~26.4m²의 창업공간, 회의실 등 공용시설 및 편의시설 제공

□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

- '14년 창업맞춤형사업 선정자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* 지원
- 지원절차 : 최종선정 → 기술보증기금 연계 → 예비창업자 사전보증



* [참고 4] 창업진흥원-기술보증기금 연계 “예비창업자 사전보증” 안내

2 예비창업자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자격 : 연구기관 재직경력이 있는 연구원 또는 연구원이 1/2이상 포함된 팀으로 신청한 예비창업자

○ 연구원 예비창업자 신청자격

- ☞ 신청자(팀원 포함)는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
- ☞ 연구원은 학사학위 이상, 연구소*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
 - * 단,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, 박사학위 소지자는 4년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며,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석사이상 수료한 대학원생(근무경력 無)의 참여 허용
 - *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국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재단법인 연구기관(기술사업화가 가능하거나 R&D기능을 수행하는 기관), 대학 및 코스닥 상장 이상의 민간기업 부설연구소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가)

○ 신청(지원)제외 대상

- 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참여 가능
- ☞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'13. 10. 3. ~ '14. 4. 22.)에 폐업한 자
- 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 - * 단, 협약 전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
- ☞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,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
 - * [참고 2]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(협약 후, 중단·중도포기자 포함)
- 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
 - * [참고 3]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14. 4. 3(목) ~ 2014. 4. 22(화), 17:00 까지
- 신청방법 : '창업넷(www.changupnet.go.kr)'을 통해 온라인 신청
 - * 중소기업청 타 창업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시 최초 선정 공고된 사업 수행

< 온라인 신청 절차 >



* 창업넷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

□ 평가 및 선정 절차

< 선정 절차 >



* 선정 절차에서 운영되는 교육, 평가 등은 신청자(대표자)가 반드시 참석, 이수, 발표 등을 하여야 함

○ (1단계 서류평가) 일반 창업자 대비 高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창업자의 특성을 반영 창업준비성 및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시행

- 가점항목 : 여성(1점), 장애인(1점)을 가점으로 인정하며, 가점은 서류평가에 한하여 반영

* 신청 시 가점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가점 적용 불가(추후 제출 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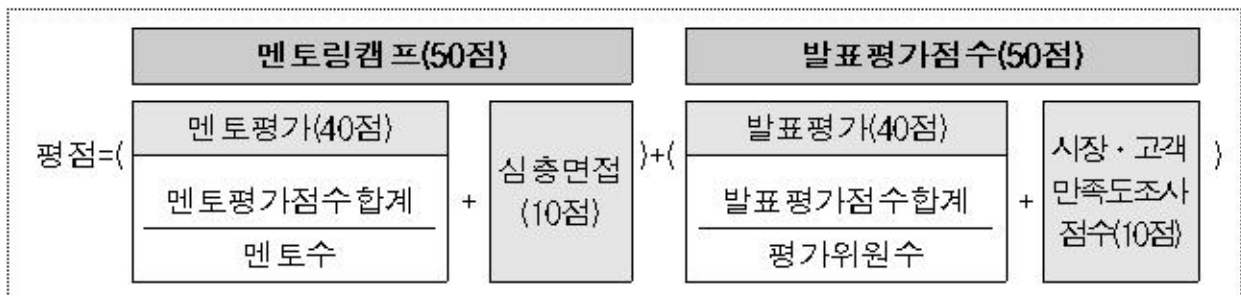
- 결과는 창업넷(www.changupnet.go.kr)을 통해 공고하고 통과된 자에 한하여 가입 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 예정

< 서류평가 기준 >

구 분	세부항목	배점
창업가적 자질(20)	창업의지 및 기업가 정신	20
창업을 위한 준비성(30)	창업 관련 교육이수 / 지재권 확보 등	15
	유사직종 재직경험 / 네트워크 보유 등	15
창업사업화계획의 적정성(30)	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	10
	기술(시제품)의 개발기간	10
	기술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, 파급효과	10
예산계획의 적정성 (20)	예산 계획의 구체성	10
	예산 금액의 적정성	10
합 계		100

- **(2단계 관찰식 멘토링 캠프)** 창업교육, 시장·고객 만족도 평가, 멘토링 평가 운영
 - **창업교육** : 기업가정신,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 자가진단, 환경 분석, 고객 분석법 등 창업 교육 시행
 - * 신청자(대표자)에 한하여 참석 가능하며,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,
 - **시장고객만족도평가** : 창업아이템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아이템의 목표 고객 및 시장에 대한 선행조사 및 평가
 - * 전문 시장 조사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실시
 - **멘토링평가** : 전문가 멘토링, 심층면접과 병행으로 창업과제의 기술성, 사업성, 창업자의 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* 신청자(대표자)에 한하여 참석 가능하며, 반드시 **멘토링 전 과정 참석자**에 한하여 **다음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**
- **(3단계 발표평가)** 창업교육, 멘토링 캠프 등을 거쳐 수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발표자료 작성·제출 후 발표평가 시행
- **(최종선정)** 멘토링 캠프 및 발표평가 결과 70점 이상 획득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

< 멘토링 캠프 및 발표평가 배점 기준 >



3. 주관기관의 신청 및 선정

□ 신청자격 : 기관 소속 예비창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이 가능하고 창업지원기관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연구기관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☞ 연구기관 소속(퇴직자 포함) 예비창업자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신청 불가
- ☞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예비창업자의 주관기관 역할 및 기능은 연구원특화 BI가 대리 수행
- ☞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출신 창업자의 경우 선정된 주관기관을 매칭하거나 연구원특화 BI가 주관기관 역할을 대리 수행
- ☞ 재단법인, 대학 및 코스닥 상장 이상의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형태의 연구기관은 전담기관에 문의하여 사업 참여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신청
- ☞ 창업맞춤형사업 주관기관은 본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중복 수행 가능

□ 선정방법 : 소속 연구원 예비창업자의 최종 평가결과를 근거로 예비창업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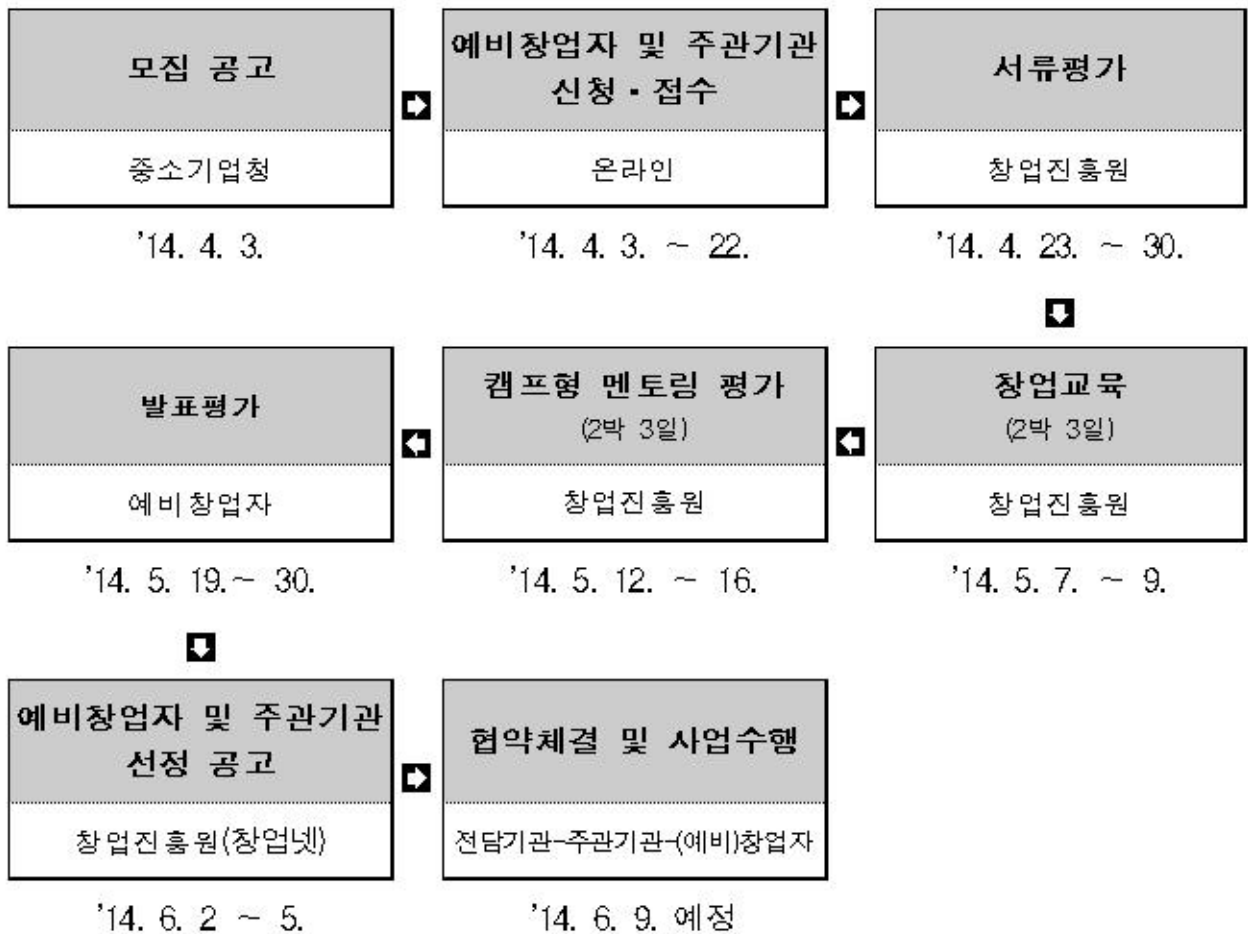
* 선정결과는 창업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탈락자에 대한 개별안내 없음

□ 사업비 배정 : 사업비는 선정된 예비창업자 1차 사업비의 최대 20%이내에서 계상하며 예비창업자 지원계획에 대한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 차등지원

< 창업지원기관 사업비 계상 기준 >

비목	계상 기준
인건비	총 간접비의 60% 이하
기술지원프로그램비	총 간접비의 30% 이상
사업운영경비	총 간접비의 10% 이하

4. 추진절차 및 일정



*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이며, 추후 변경될 수 있음(창업넷 공지사항 게시)

5.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

□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

-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'14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'창업지원사업[참고 2]'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, 중복 수혜 불가

*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협약을 진행 하고 사업을 수행

- '14년도 타 기관(타 정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의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가 본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었을 경우,
 - 타 창업지원사업 선정 포기 시 본 사업 참여 가능(타 창업지원사업과 본 사업 중복 수혜 불가)
- 타 기관(타 정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의 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(협약종료)한 자는 지원(신청)이 가능하나,
 - 본 사업 선정 시, 타 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이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,
 - 본 사업 선정 시, 타 사업으로부터 1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초과한 금액을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(예비)창업자에게 있음

□ 사업관련 문의

- 창업진흥원 콜센터 : 042-480-4363

【참고 1】

연구원 특화 창업맞춤형사업 비목별 계상기준

비 목	계 상 기 준
창업자 지원금	<p>□ 시제품제작비(1차 지원금의 70% 이상)</p> <p>○ 인건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술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소속된 기존 직원이 당해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만 계상 가능.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 채용하는 인력(4대 보험 가입)에 한하여 인건비 적용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, 팀으로 사업 참여 시 팀원은 창업 후에도 급여의 현금계상 불가 * 중소기업청 또는 타 기관 과제의 참여율의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 *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에 준하여 지급하며(근로소득원천징수 확인서),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.(100% 참여 시)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사과정(학사 미만 포함) : 월 120만원 · 학사(석사과정 포함) : 월 150만원 · 석사(박사과정 포함) : 월 220만원 · 박사 : 월 270만원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식서비스분야 업종의 경우 시제품제작비의 80%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, 이외 업종은 시제품제작비의 50%까지 인건비 계상 가능(업종 확인은 사업비관리기준 참조) <p>○ 외주용역비 : 창업자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, 외주 용역계약은 (세금)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. 개인과의 외주용역계약 불가</p> <p>○ 재료비 :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,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(견품, 시약, 재료 구입비 등)</p> <p>○ 기자재 구입비 :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구입 등(1차 지원금의 10% 이내 계상) 단, 협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가능</p> <p>○ 기자재 임차료 : 시제품제작을 위해 활용되는 자산성 물품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(실험장비의 임차비와 관련 부대비용)</p> <p>○ 기술이전비 : 시제품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(1차 지원금의 20% 이내 계상)</p> <p>□ 창업준비활동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정보 획득, 보완기술 교육,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(회의 관련 식대비 불인정) ○ 창업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, 시험분석료, 제품인증비 등 ○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(100만원 한도) ○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시행 교육 등 프로그램 참가 여비(정부지원금의 5% 이내) ○ 사업장 운영을 위한 공간의 임차비(소요비용의 50% 이내, 월 20만원 한도로 집행가능하며, 보증금성 비용은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주관기관의 현장확인을 통해 임차비 지급의 적정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** 정부, 지자체 등의 지원금 투입을 통해 조성·운영 중인 공간(BI 등)의 임차비는 지급 불가 <p>□ 마케팅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업과제의 마케팅활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, 카탈로그 제작비, 영상 제작비,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,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제작비

비 목	계 상 기 준
주관기관 사업비	<p>□ 기술지원 프로그램비(주관기관 지원금의 30% 이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비창업자의 기술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기술제공, 기술교육, 기술멘토링, 기술개발 지원(인력, 장비 등), 설비 및 장비 제공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드는 비용(창업 지원기관 내부규정 적용) <p>□ 사업운영 경비(주관기관 지원금의 10% 이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경비 <p>□ 인건비(주관기관 지원금의 60% 이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및 겸직인력 인건비, 지원인력 수당 등

【참고 2】

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현황

'09년 ~ '13년(지원(신청) 제외 대상사업)

실험실창업 지원사업,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,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,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, (제조기반)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,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(제조, 지식),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,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,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사업, 앱 창업 전문기관 운영사업(앱 개발자금, 앱 사업화자금), 청년창업사관학교, 창업선도대학(사업화자금 수혜자), 스마트 벤처창업학교, 스마트앱창작터(창업팀, 사업화자금 수혜기업) 등

'14년(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선정 시 중복지원 제외 대상사업)

☞ 최초로 선정된 사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

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, 글로벌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, 스마트앱 창작터(창업팀, 사업화자금 수혜자 또는 기업), 스마트 벤처창업학교, 청년창업사관학교, 창업선도대학(사업화자금) 등

【참고 3】

연구원 특화 창업맞춤형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*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테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)	9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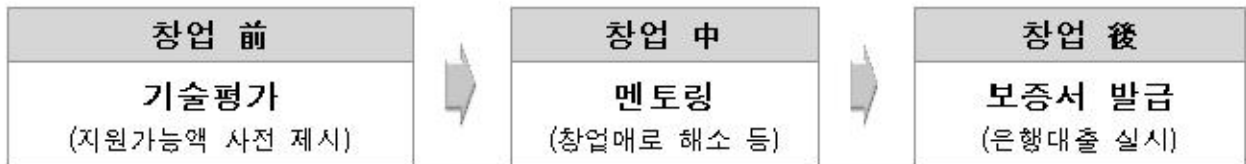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www.kostat.go.kr) 참조

[참고 4]

**창업진흥원 - 기술보증기금
연계 “예비창업자 사전보증” 안내**

- (개요)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에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가능 금액을 제시
 - ※ 보증지원 결정 후 6개월이내 창업(사업자등록)시 보증서 발급

- (지원절차) 창업前 기술평가 → 창업中 멘토링 → 창업後 지원



- (주요내용) 상세내용은 기보 홈페이지(www.kibo.or.kr) 참고

※ 주요업무안내 ⇒ 보증지원 ⇒ 보증상품 ⇒ 예비창업자사전보증

대상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일반창업) 우수기술·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(사업자등록前) -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사업화, 신성장동력산업 창업 - 녹색성장, 지식문화, 이공계, 40·50, 1인창조, 뿌리산업 창업 - 창업교실, 창직·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,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자 ○ (전문가창업) 창업예정인 교수, 연구원 기술사 및 기능장
지원자금 및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원자금 : 운전 및 시설자금(사업장 임차자금 포함) ○ 보증한도 : 창업분야 및 기술평가등급별 차등 지원* * 일반창업 : 최대 5억원, 전문가창업(교수, 연구원 등) : 최대 10억원
보증비율 · 보증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0% 전액보증(창업후 1년 경과시 90% 부분보증 전환) ○ 0.5% 보증료 감면 ○ 신청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

- (제도문의) 1544-1120, 전국 기술평가센터